

2025년 사업연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26. 02.



본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2. 2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 승 호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4
1) 총괄	4
2) 구체적 역할	4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4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5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6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6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6
나. 구성(이사)	7
1) 총괄	7
2) 구성원	10
3) 요약	11
다. 활동내역	12
1) 활동내역 개요	12
2) 회의 개최내역	12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7
1) 이사회 평가	17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1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18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
가. 역할(권한과 책임)	19
나. 구성	19
다. 선임기준	20
1) 후보 자격요건	20
2) 후보 추천 절차	20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2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1
1) 활동내역 개요	21
2) 회의 개최내역	21
3) 평가	22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3
1) 대표이사 후보	23
가) 후보자 인적사항	23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나) 후보 제안자	23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3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자격충족 여부	24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본인 소명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4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25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5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25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25
가) 사외이사 이운배	25
(1) 활동내역	
나) 사외이사 박경진	25

다) 사외이사 홍경표	25
라) 요약	2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6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26
1) 사외이사 이운배	26
2) 사외이사 박경진	27
3) 사외이사 홍경표	28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29
바. 사외이사 평가	29
1) 평가 개요	29
2) 내부평가	29
가) 내부평가 개요	29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0
(1) 총론,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30
가) 외부평가 개요	30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0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31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31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3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31
1) 사외이사 이운배	31
2) 사외이사 박경진	32
3) 사외이사 홍경표	32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32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33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34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34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34

1) 일반	34
2) 비상계획	34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34
1) 소극적 요건	34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5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35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35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3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35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36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36
3) 후보군 현황	36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3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36
6. 감사위원회	37
가. 역할(권한과 책무)	37
1) 총괄	37
2) 구체적 역할	37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7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38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38
라) 재무제표 검토 등	38
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38
바)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9
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	39
아) 기타	39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39
1) 총괄	39
2) 구성원	3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0

1) 활동내역 개요	40
2) 회의 개최내역	40
3) 평가	42
라. 감사보조조직 등	42
7. 위험관리위원회	44
가. 역할(권한과 책무)	44
1) 총괄	44
2) 구체적 역할	44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44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44
다) 걱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4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45
마) 기타	45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45
1) 총괄	45
2) 구성원	4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5
1) 활동내역 개요	45
2) 회의 개최내역	46
3) 평가	48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48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5년말 현재는 이사회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5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회계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으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평가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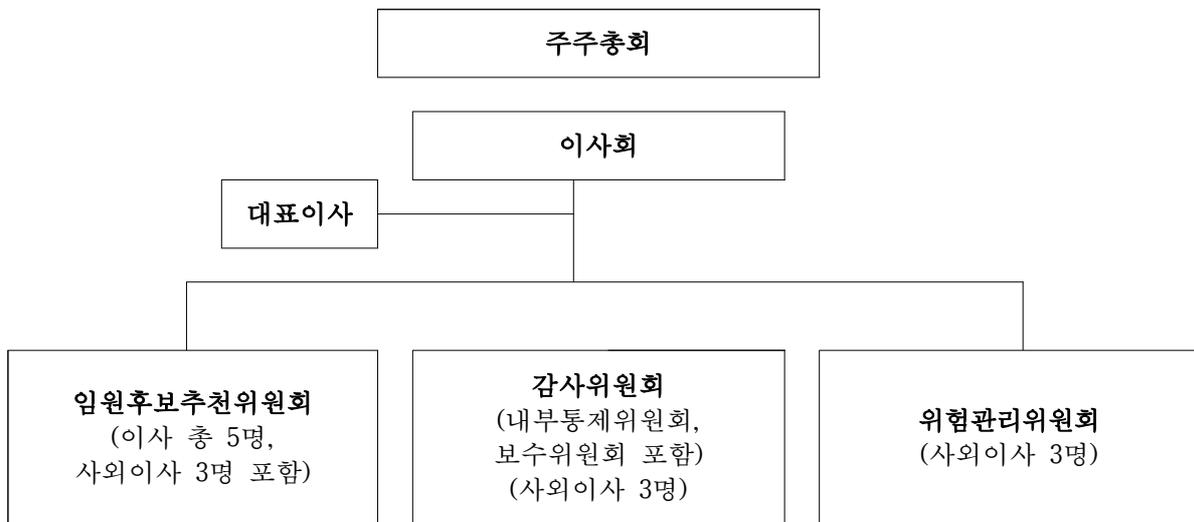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hdfund.co.kr)

(협회 사이트 주소 : www.kofia.co.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3명·60%로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이후에 상세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 업무집행 승인·의결	3/5	이운선/사내이사 (상임)	정관 제36조의 2,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3/5	이운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	3/3	이운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감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의 효율적 감독·평가	3/3	이운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위험관리위원 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정관
- 첨부2.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이사회 규정
- 첨부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4.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계획·예산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15①1., 정관§32①에 따라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사업계획·예산은 '25.12월에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경영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5.12월 개최된 25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26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안전을 심의 한 후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6년 경영목표로 당기순이익은 78억원(영업이익은 101억), 수탁고 목표는 26.7조원이며, 주식 및 채권 펀드 수익률 제고를 통한 수탁고 증대, 대체투자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 강화, 연금펀드 마케팅 주력 및 전통형 펀드 거래선 확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 정관 변경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7②)

이에 따라 '25년 3월 개최된 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5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주총 직후 소집된 임시이사회(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이사회규정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①iii, 정관§32조의3 ③). 이 경우 예산은 사업계획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예산은 '26년 사업계획과 함께 '25.12월 개최된 25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운용성과 제고 및 수탁고 확대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용 지출과 비용절감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편성원칙에 따라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5.7%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결산안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26.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6.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감사위원회 및 26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415억원 증가된 46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수탁고는 전기대비 3.1조원 증가한 25.1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①iv, 정관§32조의3)

2025년 중에는 상기와 같은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에서 상기 사항과 관련된 안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당사는 관계법령의 준수, 건전경영 도모,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개정 절차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만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두 기구의 중복 의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개최한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개정절차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험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만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개최되었던 제3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기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인 하위 기준들을 제정 및 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승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관련 정책·원칙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신용공여,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 내부거래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거래에서 이해상충행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26년 진행되는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의 이사 원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정관§27).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정관§28)

'25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외의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관§29). 이는 이사의 임기를 1년단위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임기를 2년 초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 및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임원의 결격요건 (지배구조법§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지배구조법§6)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다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 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7)

- 1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 2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5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회장으로는 금융 및 경영분야 전문가(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수석부사장 역임)이면서 우리회사의 사내이사로 2년간('24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윤선 사내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4년 1월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회장 이윤선

직위	사내이사	경력	85.07 ~ 23.12 현대해상화재보험 기획관리부문 수석부사장
임기	2024.01. ~ 2025.12.		
상임	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1. ~ 2025.12.
비고	이사회 의장은 회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하므로, 회의 진행을 위한 모든 회의의 참석과 토론 주재를 위한 안건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가장 적합한 이윤선 사내이사를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해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김승호

직위	사내이사(대표이사)	경력	15.07 ~ 23.12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임기	2024.01. ~ 2025.12.		
상임	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1. ~ 2025.12 (현재)

다) 이사 이윤배

직위	사외이사	경력	16.02 ~ 17.12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19.02 ~ 22.03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22.05 ~ 23.04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고문 23.08 ~ 현재 NH농협리츠운용 사외이사(겸)
임기	2022.06. ~ 26년 정기주총일까지		
상임	비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2022.06. ~ 2025.12 (현재)

라) 이사 박경진

직위	사외이사	경력	08.08 ~ 현재
임기	2024.06. ~ 26년 정기주총일까지		명지대학교 경영대학교수(겸)
상임	비상임 / 등기		24.01 ~ 현재 삼익스튜디오 사외이사(겸)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6. ~ 2025.12 (현재)

마) 이사 홍경표

직위	사외이사	경력	99.07 ~ 18.02
임기	2024.09. ~ 26년 정기주총일까지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부국장
상임	비상임 / 등기		18.03 ~ 23.06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9. ~ 2025.12 (현재)

3) 요약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주요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이윤선	상임	사내이사 (이사회회장)	현대해상 기획관리부문 수석부사장	'24.01.01.	'25.12.31.	24개월	감사위 임추위
김승호	상임	사내이사 (대표이사)	현대해상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24.01.01.	'25.12.31.	24개월	감사위 임추위
이윤배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NH농협손해 보험 대표이사 사장	'22.06.10.	2026년 정기주총 까지	43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박경진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교수	'24.06.10.	2026년 정기주총 까지	18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홍경표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부국장	'24.09.05.	2026년 정기주총 까지	15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 경력은 대표경력만 기재

* 재임기간은 2025년도말 기준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5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4년도와 동일하게 100% 참석하였습니다.

2월에 소집된 '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12월 소집된 '25년도 제 11차 이사회에서 '26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회차별 세부활동 내역은 아래 2)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5.02.04.(10:00) [안건 통지일 : '25.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2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임원 성과급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5.03.04.(10:00) [안건 통지일 : '25.2.2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주요 내용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정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5.03.19.(11:30) [안건 통지일 : '25.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						이건 없음
나. 2호안건 (위험관리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						이건 없음
다. 3호안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보고)						이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고유재산 운용기준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성과보상 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항)						
아. 8호안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9호안건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10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11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12호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13호안건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5.04.24.(11:00) [안건 통지일 : '25.4.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5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5.06.23.(11:00) [안건 통지일 : '25.6.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고유재산 투자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5.07.31.(11:00) [안건 통지일 : '25.7.2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5 회계연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이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주요 내용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5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5.09.02.(11:20) [안건 통지일 : '25.8.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1. 이사 성명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당사 전통자산펀드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당사 전통자산펀드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025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5.09.08.(11:30) [안건 통지일 : '25.9.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1. 이사 성명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당사 대체자산펀드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25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25.11.27.(11:00) [안건 통지일 : '25.11.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1. 이사 성명	이윤선	김승호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202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5.12.30.(11:30) [안건 통지일 : '25.12.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제2025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2025.12.30.(14:00) [안건 통지일 : '25.12.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1. 이사 성명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5 회계연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이건 없음
나. 2호안건 (소 제기 보고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이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8호안건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및 과 거근속분 산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사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이사회를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초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점수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20/20	19/20	15/15	20/20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14/15	15/15	15/15	15/15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14/15	20/20	19/20	18/20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10/10	10/10	15/15	10/10
역할 및 독립성	40/40	35/35	35/35	35/35
총점	98/100	99/100	99/100	98/100
평가결과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이운배	박경진	홍경표
평가결과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금융업 고유특성 및 회사의 사업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업에서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온 경영전문가 이운선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외이사가 아닌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 금융회사는 25년 3월 3차 이사회에서 이운배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면서 당사 사외이사로 22년부터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28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정관 제28조의 2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운배	사외/비상임	위원장	'22.06.10.	2026년 정기주총일까지
이운선	상임이사	위원	'24.01.01.	'25.12.31.
김승호	상임이사	위원(대표이사)	'24.01.01.	'25.12.31.
박경진	사외/비상임	위원	'24.06.10.	2026년 정기주총일까지
홍경표	사외/비상임	위원	'24.09.05.	2026년 정기주총일까지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방식은 미리 정해진 전사 목표를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평가합니다.

사외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3개였으며 모두 결의안건이었습니다. 또한, 3개의 결의안건 중 3개가 모두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025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03.19.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³⁾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025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12.30. 11: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김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초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김 승 호
- (2) 출생연도 : 1963년
- (3) 출신학교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4) 경력 : 국민은행 투자금융부 팀장
KB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상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현)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승호는 3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대체투자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자산운용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투자금융부 팀장, 대체투자본부 상무,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풍부한 자산운용 경험을 통해 회사의 발전 방향 및 금융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조언을 제시 가능

(2) 후보자 추천경로

김승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후보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최대주주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의해 2025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

라) 자격충족 여부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
- 평가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를 연임하는 것에 대한 겸직 제한 등의 법적 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역량 요건에 결격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다년간의 금융업 경력을 쌓아왔으며,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감안 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승호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2025년 12월 30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승호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전내용

가) 이사회

2025년에 개최된 각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여부, 안전 및 찬반 여부 등은 “2.이사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 감사위원회”, “7.위험관리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이윤배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이윤배는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윤배는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뛰어난 직무충실성과 열의를 보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박경진

(1)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경진은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경진은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재무 및 회계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감사 관련 안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홍경표

(1) 활동내역

사외이사 홍경표는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윤배는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금융관련 경험을 토대로 금융리스크 및 법률위반 예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실 적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이윤배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박경진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홍경표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현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부당행위로 인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700억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2025년도 중 사외이사 관련 교육은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이윤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

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농협중앙회,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다양한 금융 회사의 주요요직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NH농협리츠운용의 사외이사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금융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확보

2) 사외이사 박경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 연구원, 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명지대학교의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함으로써 경제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

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확보

2) 사외이사 홍경표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금융감독원까지 다양한 금융실무 및 금융감독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확보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당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등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및 평가를 거쳐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가 이뤄집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구분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비율
이사회 평가	이사회 의장	참석률	50%
		참여도	20%
자기평가	사외이사 본인	역할/활동	20%
직원평가	지원부서	업무지원	10%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2월 이사회를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참석률(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참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 자기평가(사외이사 본인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설문서 작성)등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사외이사 본인에 의한 설문조사,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사외이사 내부평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자문 및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5년도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결과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도, 충실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종합 결과	개선 방안
	참석률	참여도	역할/활동	업무지원		
이윤배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
박경진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홍경표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매우양호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25년도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5년도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 이사회 의장직은 이윤선 사내이사가 수행하고 있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윤배 사외이사가 2025년 3월 19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선임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배 선임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에서 단 한차례도 불참하지 않고 성실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에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업무 관련 조직구성은 부서장(총괄)1명, 과장 1명, 과장대리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관련 제반사항 준비 및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 일정 안내 및 소집통지, 부의안건 자료 및 선임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요청자료 제공, 사외이사 평가에 따른 서면평가서 배포 및 회수, 사외이사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이윤배

가) 재직기간

2022.06.10.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3,600만원	월 기본급 300만원 X 12개월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무	
----------------	---	--

2) 사외이사 박경진

가) 재직기간

2024.06.10.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600만원	월 기본금 300만원 X 12개월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무	

3) 사외이사 홍경표

가) 재직기간

2024.09.05.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600만원	월 기본금 300만원 X 12개월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무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은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1.1.1 ~ 25.12.31)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경력
이운배	'22.6.10.	26년 정기주 총까지	42개월	감사위('22.6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감사위원장 ('24.6월 ~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25.3월 ~ 현재), 위험관리위원장 ('25.3월 ~ 현재)	NH농협손해 보험 대표이사 사장
박경진	'24.6.10.	26년 정기주 총까지	18개월	감사위('24.6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경표	'24.9.8.	26년 정기주 총까지	15개월	감사위('24.9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 검사실 부국장
박진우	'19.6.10.	'24.9.4.	63개월	감사위('19.6월~)	감사위원장 ('22.6월 ~ '24.6월)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응호	'22.6.10.	'24.6.9.	24개월	감사위('22.6월~)	-	금융감독원 은행·저축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
김진우	'17.6.10.	'22.6.9.	60개월	감사위('17.6월~)	감사위원장 ('19.6월 ~ '22.6월)	농협손해보험 총괄부사장
김희동	'19.6.10.	'22.6.9.	36개월	감사위('19.6월~)	-	숙명여자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2025년 3월 19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략)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임기만료', '중도사임', '해임', '자격상실'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대한 일 내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중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갑작스런 최고경영자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3조

- 평가

지배구조법 제5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동법 동조2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평가

2024년 1월 1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승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경영실적 및 수탁고가 개선되는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5년 12월 30일에 개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로 김승호 대표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2025년 12월 30일 개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로 김승호 대표이사를 추천하였고, 2025년 12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합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탐색, 발굴, 평가 및 자격검증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보군을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추천에 앞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및 추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는 지원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내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경영기획본부 내 경영지원팀을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은 3명입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 신뢰 제고, 경영의 합리화 및 금융 관련 제반 위험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보상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 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평가를 수행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 부의될 제25기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3월 19일 및 2025년 12월 30일 각각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요청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 한편 2025년도 중 고유재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각종 보고 의무 등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광고물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정보보안 체계 및 전산자료 백업 및 비상계획,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등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2월 4일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안정성, 신임도, 감사수행능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및 감사보수 등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상임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보조조직에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보조조직은 위임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① 감사 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③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등

라) 재무제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연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전략 수립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바)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 및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등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자신의 책무와 책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및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 및 제출 시기(2026년 7월 2일)에 맞춰 자산운용사의 책무구조도 구축 프로젝트 경험을 다수 보유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 책무구조도 관리체계,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든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윤배	사외	위원장	2024.06.10(2022.06.10)	26년 정기주총일까지
박경진	사외	위원	2024.06.10(2024.06.10)	26년 정기주총일까지
홍경표	사외	위원	2024.09.05(2024.09.05)	26년 정기주총일까지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 내역 개요

2025년도에는 총 6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 내역

가) 제202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02.04. 오전 10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해당사항없음			

나) 제202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03.04. 오전 10시 0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해당사항없음			
4. 보고 안건				
가.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다) 제202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03.19. 오전 12시 1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성과보수체계(이연지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사고 보고	특이사항없음			

라) 제202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04.24. 오전 11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해당사항없음				

바) 제202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07.31. 오전 11시 2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해당사항없음				
4. 보고 안건				
가.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사) 제202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12.30. 오후 1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나. 소제기 보고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특이사항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3) 평가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며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지원부서에 대한 검토 작업 등을 통해 이뤄지고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이사회에서는 그 적정성 검토 후 승인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명의 내부감사인(준법감시인) 및 팀장 1명, 팀원 2인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을 감사보조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보조조직은 일반 감사 활동과 함께 내부통제제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대상	주요 내용
2025.02.04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 선정 심의 및 승인
2025.03.04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2025.03.19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수체계(이연지급) 결정 승인 ▪ 사고 보고 : 형사고발 등
2025.04.24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 개정
2025.07.31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5.12.30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소 제기 보고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 (집합투자기구)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는 고객자산 보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업무 영위 과정 및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역할 명시와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다양한 위험의 인식 및 측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이 최소 영업자본액의 200%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 위험수준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건정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고유재산의 연간 위험금액 및 손실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고유재산의 위험금액 및 손실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 한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이사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 기타

그 외 회사는 세부적인 위험관리 측정 및 관리,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반기 1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법령,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운배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까지
홍경표	사외/비상임	위원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까지
박경진	사외/비상임	위원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까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5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모든 위원들이 100% 참석하여 총 8건의 의결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3.19. [안건 통지일 : '25.3.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운선	김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¹⁾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유고 등의 발생 시 직무대행 적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 관련 규정 제 정 및 개정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액 및 손실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이윤배

2)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 고유재산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개정

나) 2025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6.23. [안건 통지일 : '25.6.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운선	김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액 및 손실한도 변경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책임 운용 강화 등을 위한 고유재산 투자 빈도 증가에 따른 위험금액 및 손실금액 한도 변경

다) 2025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9.02. [안건 통지일 : '25.8.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이운선	김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상반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활동내역						
나. 상반기 단기금융집합투자지구 유동성위기상황 분석 ¹⁾						
다. 상반기 개방형집합투자지구 유동성위기상황 분석 ²⁾						
4. 의결안건						
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 기준 개정의 건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MMF 위기상황 분석 시행 주기 및 시행방법론 질의

2) 대상 펀드 설정 및 펀드 투자 유형별 대응방안 질의

3) 집합투자지구 투자 관련 기준 변경

라) 202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9.08. [안건통지일 : 2025.09.0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이운선	김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액 및 손실한도 변경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매각 보수 수취 등 고유재산 투자 확대 필요성에 따른 위험금액 및 손실금액 한도 변경

마) 2025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12.30. [안건 통지일 : '25.1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운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6년 고유재산 위험금액 및 손실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이사회는 이사회 내 하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 활동 내역, 위원들의 출석률 등과 관련하여 연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검토함으로써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5년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Investments Co.,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투자자산의 자산운용업무
 2.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3. 경제, 산업, 기업 및 자본시장 등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 제공업무
 4. 자산운용에 관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 업무
 5. 국내외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업무 제공 <보호신설 2024.10.28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용 <보호신설 2024.10.28 >
 8. 상기 각호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 ② 이 회사는 제 1 항의 업무 이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fund.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10 조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한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제 2 항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개정 2023.7.27>

제 13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 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 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 사 ·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함)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 2(임원후보의 추천) 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1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A), 상무(B)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A), 상무(B)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의 2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의 3 (이사회 결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내부통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 5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4 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 35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 ② 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수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 34 조 내지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자문역 및 고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문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역 또는 고문의 보수 및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감 사 <삭 제>

제 39 조 <삭 제>

제 40 조 <삭 제>

제 41 조 <삭 제>

제 42 조 <삭 제>

제 43 조 <삭 제>

제 44 조 <삭 제>

제 5 장의 2 감사위원회

제 4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 하여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0 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4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 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의 3 위험관리위원회

제 44 조의 5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의 6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 또는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5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13.4.1 부>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8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9 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50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조 및 제 2 조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 70 조의 2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 1 기의 사업년도) 이 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01 년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 45 조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2013 년 사업년도는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 38 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II. 이 사 회 규 정

이 사 회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4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1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의결)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 (부의사항) <본조전면개정 2024.3.21>

① 상법상의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6. 신주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9.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결의사항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내부통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5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의 3 인이상으로 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장소) 이사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진다.

제 11 조 (간사)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12 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간사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2025.03.19.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말한다.
3. '사외이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 2 조 제 4 호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 (제·개정 및 공시)

- ①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 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예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 ② 이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구성현황

제 4 조 (이사회 구성)

- ①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사외이사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6 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2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사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공정성,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 7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8 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과 지배구조법 제 30조의 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이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법령,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
- ③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9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함)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12 조 (이사의 퇴임)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임한다.
 - 1. 임기 만료
 - 2. 사임
 - 3. 지배구조법,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위임계약 종료 사유의 발생
 - 4. 주주총회의 해임 의결

-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 13 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1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의결권 의 행사)

- ① 이사회 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의 수는 출석한 이사 의 의결권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 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 는 이사회 의 역할과 책임, 구조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 평가 업무는 이사회 운영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 ③ 이사회 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기능·운영 절차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 ② 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수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1 일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제 17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 16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 16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제 6 항 후 단 및 제 7 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⑤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⑥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⑦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1 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르면 그 외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 26 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22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제 9 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한을 행사한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직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3 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의 선임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경력, 근무성적, 품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 24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임원의 퇴임)

-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제 1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대표이사의 해임으로 퇴임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 1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는 경우 퇴임한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1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는 경우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의결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절 임원 및 임원 후보에 대한 교육제도

제 26 조 (임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입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관련 경력 등으로 업무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제 27 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직원 중에서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임원 선임시에 참고한다.
- ② 임원 후보군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집합연수, 사이버강좌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임원 성과평가)

- 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하여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한다.
- ②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③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임원의 임면, 연임 및 보수의 지급 등에 활용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이사인 임원의 경우 개인별 보수책정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보수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 ④ 사외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제 30 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②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1 조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가 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1 항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30 일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한다.
- ④ 불가피한 사유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에 대하여 공시한다.

제 32 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

-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함)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 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그 절차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및 경영승계 지원

제 33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제 6 조에 명시된 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 34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지원)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발굴 및 평가·검증을 실시하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 ④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매년 1 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 3 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제 35 조 (공시)

-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1 항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 1.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절차 개요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 4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36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르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10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범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제 3 조 (권한) ①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임원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 한다.

②위원회는 3 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제 5 조 (위원장) ①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 에는 제 5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일 1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3 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 4 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 16조 및 정관 제 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 및 감사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 4 조 (권한)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이 지배구조

법 제30조의2 및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고, 법, 동 규정, 정관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9 조 (해임 및 총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

②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제17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위임 받은 감사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이를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일상 감사대상 이외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후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④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관련 업무, 재산 및 자회사의 조사
 - 다. 외부감사인의 신규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사.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3-1.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단, 내부통제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경우 제외)
 - 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마.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3-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단, 보수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경우 제외)
 - 가.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다.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마.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 사 및 보 고

제 17 조 (감사의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준법감시인 관련사항) ①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

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감사위원은 제17조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감사보조조직)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서를 둔다. 다만, 감사부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 2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 단순한 자구 수정 및 법규개정사항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V-9.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정관 제 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및 회사 고유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기타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위험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고, 법, 동 규정, 정관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2.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7 조 (보고)** ①위원회는 활동내역을 반기단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 제 8 조 (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제 9 조 (해임 및 총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한다.
②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1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제17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위임 받은 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이를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의 소집절차) ①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같음할 수 있다)
3. 위험한도의 설정, 한도초과의 승인 및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같음할 수 있다)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고유자산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6. 그 밖에 회사의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험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 15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 임 및 보 고

제 17 조 (업무의 위임) ①위원회는 위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제17조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 수행과정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정책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또는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현황
2. 위험관리정책 이행 내역
3. 그 밖에 위험관리정책과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위험관리보조조직) ①회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및 위험관리담당부서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위험관리보조조직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위험관리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위험관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따로 정한다.

제 20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